

춘 천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1고정344 명예훼손
피 고 인 최창도 (6*****-*****), 회사원
주거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길 ***-*(남면)
등록기준지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***
검 사 이**(기소), 유**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***
판 결 선 고 2022. 10. 18.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이 유

1.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남면 소재 남전1리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**영농조합법인 소속 직원, 피해자 이**은 위 남전1리 주민협회의 직원으로 위 **영농조합법인 및 위 남전1리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*****장례식장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이다.

피고인은 2021. 3. 말경부터 같은 해 4.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**** 체험관에서 위 남전1리 마을주민인 박**에게 “2020. 1.경부터 2020. 6. 경까지 **영농법인 총 결산서인데 공금이 비어있다. 이**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령을 한 것 같다. 당장 잘라야 된다.”라고 말을 하였다. 그러나 피해자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.

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.

2. 판단

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, 박**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,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

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.

②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㉠ 피해자가 2,000만 원 정도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발언(이하 ‘이 사건 발언’이라 한다)을 조**, 송**, 명**을 통해 들었고, ㉡ 피고인은 **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남전1리 주민협의회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장례식장 및 식당 내지 매점의 공금 2,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적시하였으며, 2021. 4. 28.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㉢ 피고인이 김**, 김**, 박**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, ㉣ 피고인이 남전 1리 주민인 임**의 집에 모여 마을사람들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, ㉤ 이 법정에서는 박**, 임**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.

그러나 ㉔ 조**, 송**, 명**, 김**, 김**는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고, ㉕ 임**은 김**, 김** 등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,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, ㉖ 피고인이 **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남전1리 주민협의회 회원들과 박**, 주**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**, 박**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.

③ 박**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.

④ 박**은 수사기관에서 『정확하게 기억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2021. 3. 말 내지 4. 초경 인제군 남면 남전리 ** 체험센터에서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』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. 그러나 ㉗ 피고인이 박**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박**이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, ㉘ 피고인이 박**에게 어떤 이유와 경위로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와 피고인이 박**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앞서 본 박**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판사 송종선 _____